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1216 등록무효(상)

원 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송진경, 양범, 윤정연, 장세호, 형장우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주재연

피 고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메이저 담당변리사 하수경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21. 12. 21. 2020당349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592311호/ 2019. 6. 7./ 2020. 4. 1.

2) 구성: JBC 중로서적 북카페

3) 지정업무: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북카페업, 샐러드바업, 브런치 전문 카페업, 카페체인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제과전문카페업, 커피전문점업, 카페테리아업, 스터디카페운영업, 간이음식점업, 게스트하우스운영업, 스낵바업, 음료디스펜서 대여업, 모임/컨퍼런스/컨벤션/전시회/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임대업, 스터디공간제공업

나. A의 영업 및 폐업 등

- 1) A은 1907년 서울 D 지상에 개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점으로 약 95년 간 운영되어 오다가 2002년 폐업하였다(A은 E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이후 망 F 등에게 인수되어 운영되었고, 이후 망 F 등이 설립한 A 주식회사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하에서는 운영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구 A'이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2016. 10. 26. 설립되어 도서판매(도, 소매업) 및 위탁업, 서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같은 해 말부터 'A'이라는 상호의 서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서점을 '신 A'이라 한다).

다. 선사용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

- 1) 선사용서비스표
 - 가) 구성: A
 - 나) 사용업무: 출판업, 서적판매업, 서적도매업 등
- 다) 사용자: 구 A, 원고(다만 원고는 '**등로서적** '과 같이 A의 문자열을 파란색의 글씨체로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 2) 선등록서비스표 1(갑 제3호증)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351822호/ 2017. 6. 27./ 2018. 4. 18.



나) 구성:

- 다) 지정업무: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마케팅/시장연구 및 시장분석업, 사업경영/관리 및 사무처리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간행물광고업, 광고 및 광고물(전단지/브로슈어/인쇄물 및 견본) 배포업, 광고대행업, 광고물출판업, 서적/리뷰/신문 또는 만화책 정기구독알선업, 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 학습지보급알선업, 서적 도매업,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서적 도매업, 서적 소매업, 서적 판매대행업, 출판물 판매대행업, 서적 판매알선업, 출판물 판매알선업, 서적 구매대행업, 출판물 구매대행업
 - 라) 권리자: 원고
 - 3) 선등록서비스표 2(갑 제4호증)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351823호/ 2017. 6. 27./ 2018. 4. 18.



나) 구성:

다) 지정업무: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마케팅/시장연구 및 시장분석업, 사업경영/관리 및 사무처리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간행물광고업, 광고 및 광고물(전단지/브로슈어/인쇄물 및 견본) 배포업, 광고대행업, 광고물출판업, 서적/리뷰/신문 또는 만화책 정기구독알선업, 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 학습지보급알선업, 서적 도매업,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서적 도매업, 서적 소매업, 서적 판매대행업, 출판물 판매대행업, 서적 판매압선업, 출판물 판매알선업, 서적 구매대행업, 출판물 구매대행업

라) 권리자: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0. 11.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3497호로 심리하여 2021. 12. 2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구 A' 또는 '신 A'을 관념케 하여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한다.
-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일 이전에 국내 일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출처로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각 표장 및 지정상품 등이 서로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 해당한다.
-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과 동일·유사하고, 피고는 선사용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에 화체된 신용이나 명성에 무단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 1)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북카페'라는 부분을 통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서점이 아닌 북카페에 관한 것이라고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들에게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선사용서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구 A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

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A의 폐업 후 비로소 설립되었으므로, 구 A이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의 주지성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선사용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이 국내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및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해당 여부1)

1) 관련 법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460 판결 등 참조).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

¹⁾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 먼저 검토한다.

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참조).

등록상표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후11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2) 선사용서비스표의 알려진 정도

가) 인정사실

갑 제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구 A은 1907년에 서울 D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서점으로, 2002년 최종 부도 처리되어 폐점될 때까지 약 95년간 영업해 왔다.
- (2) 구 A의 폐업 후에도 95년 역사의 구 A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출판업계 관계자들, 서울도서관 관장,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구 A 재창건을위한 발기인 모임'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 (3) 원고가 설립된 2016. 10. 26. 이후 'A이 부활하였다'는 내용의 국내 언론

기사들이 다수 게재되었는데 그중 구 A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및 출처	내용
2017. 1. 20.	1980년대 대학생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종로 일대 서점 거리를 상징했던
의약통신	A이 14년 만에 돌아왔다. 스마트폰은커녕 휴대폰도 없었던 시기, "만나자"
기기이년 (갑 제13호증	고 하면 A에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다. 그때의 향수를 젊은 세대에도 불
의 3)	어넣고자 A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	A은 1980년대 생긴 G, H와 함께 종로의 상징이었다.
2017. 1. 8.	
매일경제	1907년 서울 I에 문을 연 A은 한 세기를 버티며 종로를 서점 일번가로 이
(갑 제13호증	끈 문화사적 유산이었지만 2002년 폐점했다.
의 4)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 신화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던 'A'이 되돌아
	온다.
	A은 자그마한 목조건물 기독교서점 'E'로 1907년 I에 문을 열었다. 이후
	국내 최대 서점으로 발돋움하면서 문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끌
2022. 1. 18.	었다. 한정된 공간에 어마어마한 책을 쌓아둔 A은 한때 중고등학생들의 수
한국일보	학여행 코스로 이용되기도 했다. '독자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최초로 기획
(갑 제13호증	했을 뿐 아니라 자체 브랜드로 책을 만들기도 하고, 대학로에 지점도 내
의 7)	고, 인터넷 서점을 제일 먼저 여는 등 동네책방 수준이던 서점을 현대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인근 교보·G도 설립 초기 A 출
	신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인근 서점 뿐
	아니라 인터넷 서점들과의 경쟁도 격화되고 독자 수가 차츰 줄어들면서
	2002년 최종부도 처리됐다.
2022. 1. 18.	1907년 서울 에 문을 연 구(舊) A은 한 세기 가까이 종로를 '책과 만남'의
· · · · · · · · · 코리아넷	상징적 장소로 이끈 지형지물이었다. 핸드폰·인터넷 등이 없던 시절 국내
^{고리하入} (갑 제13호증	최대 서점으로 발돋움하면서 문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끌었다.
의 12)	하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서점들과의 경쟁이 격화됐고, 2002
·	년 폐점됐다.
2016. 12. 22.	A은 E가 1907년 I에 문을 열었으나, 1980년대 이후 H와 G의 등장과 온라
TBS	인서점이 생기면서 지난 2002년 문을 닫았습니다. 출판계의 노력으로 95
(갑 제13호증	년 역사의 A이 다시 문화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날짜 및 출처	내용
의 13)	
2016. 12. 25. 조선비즈 (갑 제13호증 의 14)	◆ 문인이 사랑한 'A'···"청년들의 정신적 부표가 된 장소였다"
	◆ 위치도 주인도 다르지만 옛 향수 자극해…'A'이름만으로도 추억 되살아
	나.
	1907년 E가 창립했던 구(舊) A은 가장 역사가 긴 서점이었으며, 최초로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서점이기도 했다. 청춘들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고,
	I를 95년간 지켜온 대한민국 1호 서점이었다. 'J', 'K' 등 80년대 I의 문학
	전성기를 견인했던 유서 깊은 서점들이 폐업하고 나서도 오롯이 I를 지켜
	왔다. 그러나 중소 서점들의 폐업과 함께 인터넷서점의 등장에 따른 변화
	에 적응하기 못하면서 부도를 맞이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6. 12. 23.	A은 1907년 I에 문을 연 후 1980년대 개장한 인근의 G, H와 함께 종로의
뉴스1	상징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고 다른 대형 서점과의 경
(갑 제13호증	쟁에서 밀려 경영난을 겪으며 2002년에 문을 닫았다. 이후 출판계에서는
의 15)	A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 구체적 검토

선사용서비스표의 표장은 문자열 '종로' 부분과 문자열 '서적' 부분이 결합한 것으로서 '종로'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서적' 부분은 출판업, 서적판매업을 직감케 하므로, 선사용서비스표의 'A'이라는 표장 자체는 식별력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기간 및 사용의 계속성, 국내 언론 기사, 구 A의 폐업에 대한 출판업계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서비스표는 신 A이 개점한 2016년은 물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된 2019년까지도 그 사용업무에 관하여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서 '특정인'이란 해당 상표의 권리자 또는 사용자 본인에 한하여야만 한다는 전체 아래, 선사용서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구 A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A의 폐업 후 비로소 설립되어 구 A이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의 주지성이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선사용서비스표가 원고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선사용서비스표는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 권리자 또는 사용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만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사용서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인 '구 A'의 서비스표로 인식되는 이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중로서적'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
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 'JBC'를 도형화한 ' **JBC** '부분과 문자열 'A'

으로 구성된 '**등로서적**' 부분, 문자열 '북카페'로 구성된 '**북카페**'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다.

-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상 ' **JBC**' 부분은 그 뒤에 표기된 A 북카페의 영문 머리글자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 (3) '**북카페**' 부분은 지정업무인 북카페업, 카페체인업, 제과전문카페업 등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 (4) '중로서적'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

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져 있어 식별력이 강하다. 또한 '**등로서적**' 부분이 나머지 문자열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양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A'이고 이를 기준으로 선사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

4) 부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6 내지 50호증, 을 제2, 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를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서비스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일 당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선사용서비스표와 매우 유사하다.
- (2) '북카페'는 일반적으로 서점 등에서 일부 공간을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인 '북카페업'에 사용되는 경우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적판매업과 그 형식이나 내 용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 (3)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구 A 및 원고가 개설하는 신 A에 관한 다수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과정에서 선사용서비스표를 모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가) 피고는 2016. 4. 10. B 등으로부터 신 A 및 신 A 라이프 스타일 점포 개발에 관한 전속권을 위임받아 점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연 매출의 2%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개점하는 '신 A'의 점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나) 피고는 2018. 11. 22.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10. 15.까지 재직하였는데,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9. 6. 7.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
 - (다) 원고의 대표이사 B는 '신 A이 구 A의 복원'이라는 점에 홍보 활동의 중

점을 두었고, 이러한 내용은 메일 등을 통해 피고에게 공유되었다.

- (라) 원고가 신 A을 개점할 무렵인 2016년 말 구 A이 부활하였다거나 신 A이 구 A을 계승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 (마) 주식회사 A디앤씨는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9. 11.경 주식회사 어반프라퍼티 등에게 'A 북카페' 영업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순매출액의 일부를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A 북카페' 가맹사업을 추진하였다.

5) 소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서비스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

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해당 여부

- 1) 선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도 선사용서비스표는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된다.
- 2)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북카페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구 A'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 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선사용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유

사하거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여,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자였던 '구 A'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 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 해당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무효 사유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